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서욱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입학을 거부하거나 가입학 기간 중 교육과정(예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예정자에 대해 입학を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임시 입학을 가입학으로 용어 통일(안 제10조 제목, 제1항 및 제2항)

1) 현행 법령에는 ‘임시 입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입학’으로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임.

나. 가입학 거부시 입학 취소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신설)

1) 현행 법령상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임시 입학(가입학)을 시행 중이나 가입학을 거부할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가입학 미참가자의 경우 가입학에 참가한 입학예정자와의 형평성, 사관생도 생활 적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가입학을 거부하거나 가입학 기간 중 교육과정(예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예정자에 대해 입학

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대통령령 제 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임시 입학)”을 “(가입학)”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중 “임시 입학”을 “가입학”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장은 가입학을 거부하거나, 예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입학 예정자에 대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임시 입학) ①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학 예정자를 입학기일 전에 <u>임시 입학</u>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u>임시 입학</u> 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u>임시 입학</u> 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신 설>	제10조(가입학) ① ----- ----- ----- <u>가입학</u> ----- ----- ② ----- <u>가입학</u> ----- ----- <u>가입학</u> ----- ----- --. ③ 교장은 가입학을 거부하거나, <u>예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입학예정자에 대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6244